

2003년도수시분지방채발행계획안

검 토 보 고

이 계획안은 2003년 11월 13일 파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3년 11월 15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음

1. 제안이유

- 장기간 계속사업으로 추진하는 공설운동장 건립사업의 재원조달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 마무리 투자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해 지방채를 발행하여 부족사업비를 충당하고자 함.

2. 주요골자

- 공설운동장 조성공사 지방채 발행
 - 발 행 액 : 6,000백만원
 - 차 입 선 : 재정경제부
 - 자금종류 : 재정융자특별회계자금
 - 이 율 : 연 2.0%
 - 발행시기 : 2003년 11월
 - 상환방법 : 5년거치 10년 균분상환
 - 상환재원 : 지방비(시비부담 100%)

3. 지방채발행 계획

- 장기간 대규모 사업비의 지속적인 투자로 원활한 재정지원의 한계와 많은 문제점 도출로 인한 사업추진이 어려운 공설운동장 건립에
- ⇒ 재원조달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 마무리 투자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해 지방채를 발행하여 부족사업비를 확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함

□ 발행개요

(단위 : 백만원)

차입자금	사업명	승인액	상환조건 (연리)	상환재원	예산편성
재정융자 특별회계기금 (재정경제부)	공설운동장 조성	6,000	5년거치10년 균분상환 (2.0%)	시비부담 100%	2003년도 제3회추경

□ 추진상황

○ 승인통보

▪ 재정융자특별회계기금(재정경제부)

- 행자부 ⇒ 경기도 : 2003. 10. 20
- 경기도 ⇒ 파주시 : 2003. 10. 21

□ 공설운동장 사업개요

- 기 간 : '94 ~ '04(공사기간 '97. 4~'04. 12)
- 위 치 : 파주시 급능동 산18-1번지 일원
- 내 역 : 158,210㎡(47천평)
 - ┌ 주경기장 : 400M×8코스(관람석 23,000석)
 - └ 보조경기장 : 테니스장 5면, 다목적운동장 1면 등 6개시설
- 공정률 : 69%('03. 11. 8일 현재)

4. 검토의견

- 동 지방채발행 계획안은 장기간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설운동장건립사업의 재원조달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 마무리 투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 부족사업비를 충당하고자 지방채를 발행하고자 하는 것임.
- 금번 지방채발행을 통해 파주시민의 숙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파주 공설운동장 조성사업에 低利의 지방채를 발행하여 부족한 사업비를 확보하고 안정적인 재원확보를 통해 원활한 사업추진과 사업의 효율적인 마무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.
- 행정자치부로부터 지방채발행계획이 승인(2003. 10. 20)되어 금번 발행하게되는 지방채의 규모는 6,000백만원이며 기채 조건은 재정경제부 재정융자특별회계기금으로 융자이율 2.0%, 상환기간은 5년거치 10년 균분상환 조건으로 저금리의 지방채 발행 조건임.
- 발행하는 지방채의 상환은 2004년부터 1억2천만원씩 이자를 상환하게되고 2009년부터는 7억2천만원 ~ 6억1천200만원씩의 원금과 이자를 오는 2018년까지 상환하게됨.
- 2003년 10월말 현재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 우리 시 채무액은 원금 42,795백만원과 이자 12,250백만원을 포함하여 총 55,045백만원으로 전체 예산대비 채무비율이 14%수준으로 도내 기초자치단체의 평균(중간) 수준임

- 우리시는 지방채원리금 상환의 연체가 없는 단체이며 채무상환비율이 20%이하인 단체로 지방채를 추가로 발행할 수 있는 단체에 포함되어 재정건진화를 위한 적정규모의 지방채 발행이 가능한 단체임.
- 그동안 우리시의 지방채 운용실태를 살펴보면 국민주택기금 등을 제외한 지방채 대부분이 5 ~ 15년 중장기채로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위주로 운영되고 있으며 도로, 상하수도, 재해복구, 국민주택, 청사정비 등 지역 SOC 투자수요에 활용되고 있음.
- 2004년도 재정여건 전망을 보면 예년에 비해 국도비 보조금이 크게 늘어남으로써 상대적으로 시비 부담이 증가하게 되어 재정운영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단일사업인 공설운동장 마무리사업에 필요한 추가재원 약 130억원을 집중투자하기에는 재정운영에 다소 무리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임.
- 따라서 파주시공설운동장 조성공사에 투자할 안정적인 재원확보를 위해 지방채를 발행하고자 하는 것은 불가피한 조치로 보이며 지방채 발행목적과 사용용도 등도 지방채 발행기준에 부합되어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.
- 또한 금번 발행되는 지방채는 우리시가 대부분 활용하고 있는 경기도 지역개발기금의 이율 3.5%에 비해 비교적 低利의 이율 조건이며 원금의 회입기간이 도래하는 2009년 이후에는 택지개발 및 산업단지 개발, 신도시 건설 등으로 인해 세수전망이 밝아 지방채 발행에 따른 향후 채무상환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됨.

《地方財政法施行令》

제 6조의2 (지방채의 발행대상등) ①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.

1. 공용·공공용시설의 설치
2. 당해 사업의 수익금으로 원리금상환이 가능한 사업
3. 천재·지변으로 인한 재해등 예측할 수 없는 세입결함의 보전
4. 재해예방 및 복구사업
5. 기발행한 지방채의 차환
6. 기타 주민의 복지증진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